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보

제954호 2015년 9월 11일(금)

고 시

○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·고시 ····· 2

공 고

○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··· 3
○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6

회 람									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415, FAX : 639-2106)

속초시 고시 제2015-40호

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·고시

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8일

속 초 시 장

1. 시 행 일 : 고시일로부터 즉시

2. 고시내용 :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

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중 “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·공고하는 구역”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(용도지역의 지정)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30조(용도지역의 세분)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”으로 한다.

3. 기타사항 :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(전화 639-276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공고 제2015-592호

「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 :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

2. 개정취지

○ 상위법 규정에 맞게 규제사항 개선

○ 납세자의 불편·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납세담보 요구에 있어 예외조항 신설 및 자구 수정(안 제24조)

○ 체납처분 중지에 있어 공고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1개월로 개정 (안 제39조)

○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있어 체납액의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인 1천만원으로 개정(안 제47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**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**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**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** 주소・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: 우)24826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 469-6)
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
(전화: 033-639-2151, FAX: 033-631-0778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본문 중 “요구여야 한다”를 “요구할 수 있다”로 하며,

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영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제39조제3항 중 “10일간”을 “1개월간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각각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	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---------- ---------- 요구할 수 있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영 제8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	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
①, ②(생 략)	①, ②(생 략)
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개월간 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생 략)
제47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	제47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)
①시장은 법 제140조에 따른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고액·상습체납자(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.)에 대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	① ---------- -------- 1천만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1천만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(생 략)	②(생 략)

속초시 공고 제2015-593호

「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 입법예고

「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9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 :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

2. 개정취지

○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으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있어 체납액의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인 1천만원으로 개정(안 제99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 참조

5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**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**

2) 의견제출자의 성명**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** 주소・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 : 우)24826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 469-6)
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
(전화: 033-639-2151, FAX: 033-631-0778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있어 체납액의 범위를 상위법에서 정한 최저금액인 3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개정(안 제9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(P4)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그 밖의 사항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(P3)
2) 입법예고 : 진행예정(2015. 9. .)
3) 성별영향분석평가서 : 분석평가대상 아님
4) 규제심사 : 규제대상 아님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9조제1항 중 “3천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9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) ① 시장은 조례 제47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고액·상습체납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 하여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해야 한다. ②,③ (생 략)	제99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1 천 만 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 ②,③ (생 략)